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1436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607,944원 및 그 중 3,726,790원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7. 3. 2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7. 3. 28. 접수 제169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조미옥

별지